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-4호

「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및 운영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월 15일

## 대전광역시의회 의장

###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인 예술성과 전통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에 학술성을 추가함으로써 허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인 예술성과 전통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에 학술성을 추가함.(안 제7조 제2항제5호)

### 3. 의견제출

가.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2일  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행정자치  
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02-789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(전화 042-270-5124,  
FAX 042-270-5029, E-mail : sjulee2000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### 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#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예술성과 전통성 및 학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용허가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~ 4. (생략) 5. <u>예술성과 전통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</u> 6. (생략)	제7조(사용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예술성과 전통성 및 학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</u> 6. (현행과 같음)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44조(공공시설) 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(생략)